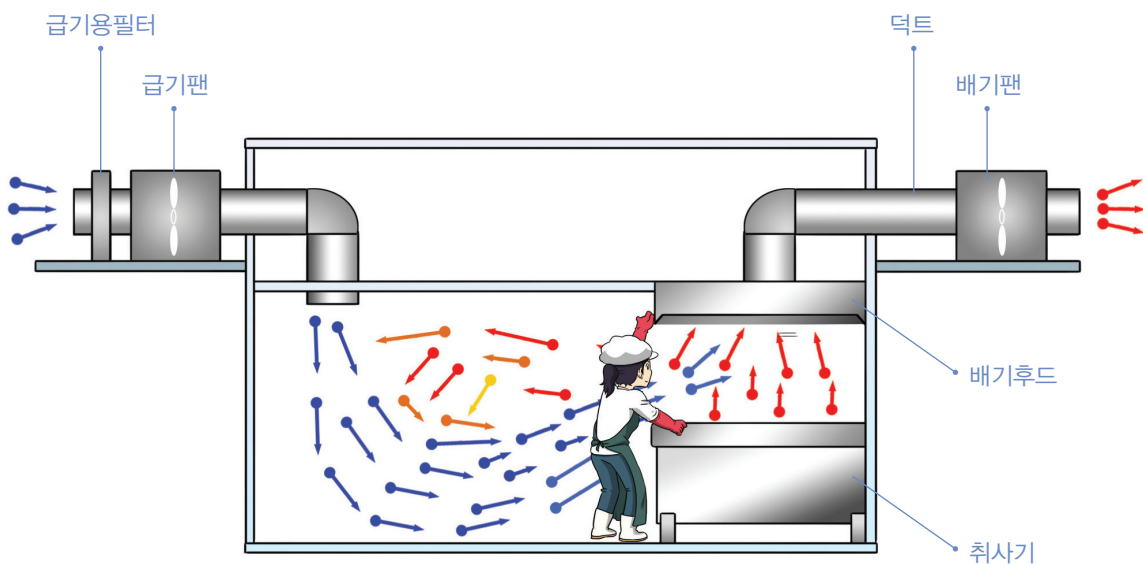




배기후드

배기후드란?

배기후드란 주방이나 밀폐된 공간의 열기나 냄새를 제거하는 환기장치이다. 공업용 환풍기(팬)를 사용하는 경우는 실내와 거리가 가까울 때, 거리가 먼 경우는 신우쿠 팬을 사용하며 거리와 후드의 크기에 따라 팬의 용량을 결정하여 사용해야 배기 효율이 높아진다.



조리실 내 배기후드

● 배기후드의 구조 ●

- 배기후드(Hood) : 일반적으로 형태가 상방 흡인형으로 가열원의 위에 설치되며, 일자형과 샷갓형으로 분류되며, 일자형은 벽체에 가까운 경우 샷갓형은 설치할 곳이 중앙인 경우 사용
- 덕트(Duct) : 우리 몸의 혈관이 피가 통하는 길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후드에서 포집된 증기분을 이송시키는 통로 역할을 함
- 배기팬(Fan) : 배기후드 및 덕트 내의 가열 증기분의 각종 압력손실을 극복하고 원활하게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한 동력원을 제공하는 장치

● 조리실 내 배기방식 ●

- 주방후드를 이용한 배기만하는 방식
- 급기공급 및 주방후드 배기방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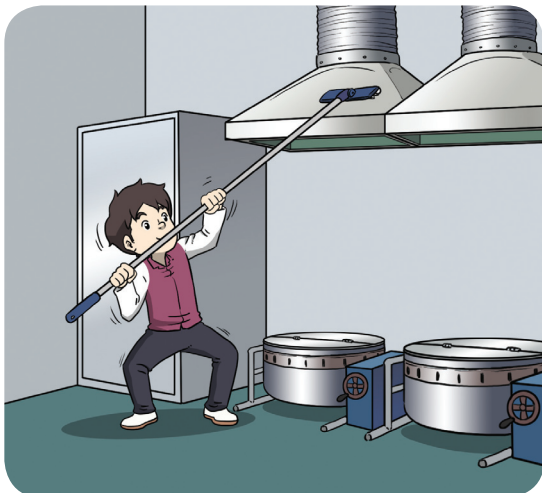


주요 위험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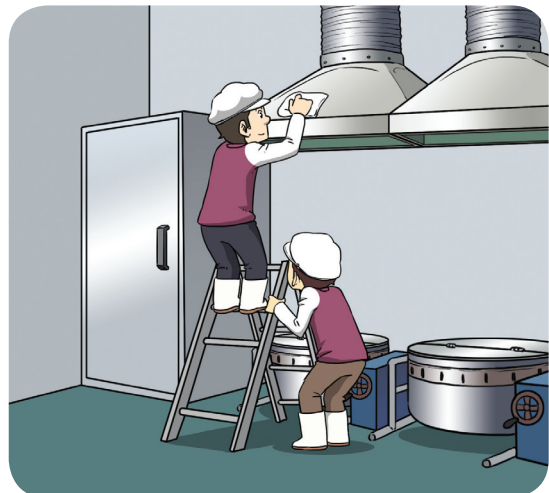
- ✔ 후드 아래 가열설비 위에 올라가 청소작업 중 추락
- ✔ 후드 내의 기름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날카로운 돌출부에 손을 베임
- ✔ 후드 주변 화재위험 분위기(인화성 유류 등)로 인한 화재
- ✔ 배기후드 청소 중 전기설비 누전으로 인한 감전

안전대책

- 배기후드 청소작업 안전작업절차 준수
 - 후드 청소 시 전용 청소용구를 사용하여 작업 수행
 - 고소작업 시 작업자의 추락방지 위한 전용 작업대(발판) 및 안전사다리 사용
 - 높은 위치의 후드 청소작업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은 공동으로 작업 실시
- 보호구 착용
 - 배기 후드 청소작업 등 고소작업 시 안전모, 미끄럼방지화 등의 개인보호구 착용
 - 청소 중 후드외관 등에 손 베임 등이 없도록 베임방지용 안전장갑 착용
- 조리실 내의 환기 철저
 - 배기후드의 미작동 시 가열 증기(일산화탄소 등)가 조리실 내에 체류되지 않도록 환기를 실시
- 전기설비에 의한 감전 예방
 - 청소 작업자의 감전방지를 위해 배기팬 등 전기설비의 접지 실시 및 누전차단기 작동여부를 확인



전용 청소용구 사용



사다리 사용 시 2인 1조 작업





재해사례 : 배기후드 내부 청소 중 미끄러져 떨어짐

개요

단체 급식실 조리실 내에서 배기후드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회전식 국솥 위로 올라가 세척제를 걸레에 묻혀 청소 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짐



발생원인

- 조리기구를 작업발판으로 이용
 - 배기후드 청소 시 회전식 국솥 위로 올라가 작업을 실시
- 개인보호구 미착용
 - 미끄럼방지 작업화 등 보호구 미착용

예방대책

- 전용 작업발판 사용
 - 배기후드 청소작업 시에는 전용 작업대(안전 사다리)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실시하거나, 아래에서 길이가 긴 청소용구를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
-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
 - 미끄럼방지 작업화 착용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 작업 실시
- 공동 작업 실시
 -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에는 2인 1조 등 공동으로 작업을 실시하며, 작업 시작 전 안전 교육 실시





안전수칙

- 배기후드와 덕트 속에 기름기 등 이물질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청소를 실시한다.
- 배기후드 청소 시에는 전용 청소용구 및 고소작업 전용 작업대(작업발판)를 사용한다.
- 후드와 덕트 등 배기후드 설비 내의 환기능력은 충분한지 여부를 확인한다.
- 배기후드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즉시 가열기구 · 설비 등을 정지시킨 후 조리실내 환기조치를 취한다.
- 배기팬 등 전기설비의 접지 실시 및 누전차단기 작동여부를 확인한다.
- 후드를 작동시킬 때 주위를 정돈하고, 불필요한 물건을 제거한 후 조작한다.
- 조리 작업자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. (미끄럼방지화, 앞치마, 안전장갑 등)
- 배기후드 작동 시 이상소음이나 진동, 전동기와 배기팬 작동상태 이상여부를 점검한다.
- 배기팬이 운전할 때와 작동중인 회전체에는 접근을 금지한다.
- 점검 및 수리 시에는 반드시 모든 회전체가 정지되었는지 확인 후 접근한다.



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 - 제72조 (후드)
 - 제74조 (배풍기)
 - 제78조 (환기장치의 가동)
 - 제304조 (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 방지)
 - 제73조 (덕트)
 - 제75조 (배기구)
 - 제302조 (전기기계 · 기구의 접지)

